

국회공보



통 권 제2012-23호
제306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2012년 3월 27일(화요일)

국회사무처

(인터넷게재: <http://www.assembly.go.kr>)

(편집: 의사국 의사과 788-2991)

의원 및 교섭단체

- 교섭단체 의원 제적 1
- 국회의원 궐원 통지 1

의안 등 접수·처리

- 의안 접수 및 회부 1

공지사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 통지 1
- 헌법소원심판 회부 통지 2
-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5
- 인사 5
- 국회관계법규 7
- ◇ 국회도서관공무원 신얼하일기 지침 7
- ◇ 국회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담팀 운영에 관한 지침 9

회								
람								

의원 및 교섭단체

○ 교섭단체 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제 적 연월일	사유
박주선	민주통합당	'12. 3. 7	탈당
최인기	민주통합당	'12. 3. 9	탈당
김충조	민주통합당	'12. 3.13	탈당
강봉균	민주통합당	'12. 3.14	탈당
조영택	민주통합당	'12. 3.14	탈당
김재균	민주통합당	'12. 3.15	탈당
유정현	새누리당	'12. 3.18	탈당
신 건	민주통합당	'12. 3.19	탈당
배영식	새누리당	'12. 3.20	탈당
진성호	새누리당	'12. 3.21	탈당
이명규	새누리당	'12. 3.21	탈당
김성조	새누리당	'12. 3.21	탈당
성윤환	새누리당	'12. 3.21	탈당
김희철	민주통합당	'12. 3.21	탈당
조배숙	민주통합당	'12. 3.21	탈당

○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2년 3월 13일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충조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함.

의원명	교섭단체 (정 당)	선거구	궐 원 연월일	사유
김충조 (金忠兆)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2. 3.13	탈당

의안 등 접수·처리

○ 의안 접수 및 회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

소관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문화체육 관 광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정장선의원 등 12인	'12. 3.22	'12. 3.23

공지사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 통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1. 접수일 : 2012. 3. 22
2. 사건번호 : 2012헌가5
3.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4. 내용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회부요지

○이 법률조항은 증여재산가액의 정산기준일을 상장일로부터 3월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제도에 의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주식을 반드시 상장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처분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정산기준일에는 실현되지도 않았고 실현될 수도 없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함.

○ 헌법소원심판 회부 통지

◇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1. 접수일 : 2012. 3. 16
2. 사건번호 : 2012헌마104
3.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4. 내용
 -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 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회부요지
 - 이 법률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정의됨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약없는 노역장 신세를 지고 있는 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1. 접수일 : 2012. 3. 16
2. 사건번호 : 2012헌마162
3. 소관위원회 : 지식경제위원회
4. 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5. 회부요지
 -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자유를 침해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대형마트 중에서도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함.

◇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1. 접수일 : 2012. 3. 16
2. 사건번호 : 2012헌마174
3.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4. 내용
 -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5. 회부요지
 - 현재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통신매체의 현격한 발달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의식수준도 향상되었으므로 전통적인 성인연령은 선거권연령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각종 대한민국 법률 조항에서 18세를 기준으로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조항은 과도하게 18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함.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1. 접수일 : 2012. 3. 16
2. 사건번호 : 2012헌마192
3.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4. 내용
 -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서둔동 포함), 수원시정선거구
5. 회부요지
 -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특정 지역(서둔동)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바, 이는 게리맨더링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1. 접수일 : 2012. 3. 16
2. 사건번호 : 2012헌마18
3.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4. 내용
 -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할 수 있다.

5. 회부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법률조항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규정으로도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함.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1. 접수일 : 2012. 3. 16
- 2. 사건번호 : 2012헌바57
- 3.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4. 내용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5. 회부요지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1. 접수일 : 2012. 3. 16
- 2. 사건번호 : 2012헌바62
- 3.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4. 내용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

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회부요지

○ 구 법에 따라 법률사건을 알선 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 종료 후 청구인이 알선의 댓가를 개정된 변호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변호사법을 적용해 소급처벌하고 있어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배함.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소원

- 1. 접수일 : 2012. 3. 16
- 2. 사건번호 : 2012헌바65
- 3.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4. 내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회부요지

○이 법률조항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계약체결의 자유를 사용자주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함.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1. 접수일 : 2012. 3. 16
- 2. 사건번호 : 2012헌바66
- 3.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4. 내용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회부요지

○이 법률조항은 ‘위력’ ‘업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형벌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1. 접수일 : 2012. 3. 16
- 2. 사건번호 : 2012헌바67
- 3.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4. 내용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회부요지

○이 법률조항 중 ‘대부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부조건’이 아닌 사항 중 어느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대부조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 규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규제를 받는 광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을 위배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 1. 접수일 : 2012. 3. 16
- 2. 사건번호 : 2012헌바71
- 3. 소관위원회 : 국토해양위원회
- 4. 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5. 회부요지

○이 법률조항은 이주대책만 규정하고 생활대책을 규정하지 않아 불충분한 입법(부진입법부작위)을 하고 있어 우리 헌법이 정한 정

당한 보상의 원칙을 위배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1. 접수일 : 2012. 3. 22
- 2. 사건번호 : 2012헌마107
- 3.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4. 내용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5. 회부요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면서 어떤 이는 하루 일당을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어떤 이는 5만원으로 책정하여 납입대상자들을 차별을 두고 있는 바,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함.

◇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1. 접수일 : 2012. 3. 22
- 2. 사건번호 : 2012헌마143
- 3.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4. 내용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회부요지

○납세와 병역에 있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자들이 함께 조직을 구성하여 연대하는 것은 실제적 위험을 가져다 주지도 않음에도 이를 범죄 조직으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1. 접수일 : 2012. 3. 22
- 2. 사건번호 : 2012헌마188
- 3.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4. 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

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 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 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5. 회부요지

○청구인은 2010년 사법연수원 입소하여 재직 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는 바, 그 당시 법률에는 병역의무 이행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로 임명될 수 있었으나, 2011년 7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연수원을 마치더라도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 1. 접수일 : 2012. 3. 22
- 2. 사건번호 : 2012헌바94
- 3. 소관위원회 : 국토해양위원회
- 4. 내용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 회부요지

○이 법률조항 이행강제금 조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의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지가상승률에 따른 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가상승률의 5~10배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토

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

○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3. 21(수) 현재

선거구 교섭단체	지역구	비례 대표	계	비율(%)
새누리당	132	30	162	55.3
민주통합당	66	14	80	27.3
어느 교섭단체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42	9	51	17.4
계	240	53	293	100

○ 인사

1. 복직

서기관 김세현 국회사무처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에 포함
(2012. 3.29.)

2. 결무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여성가족위원회 (차관보급)
일반계약직2호 차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엄태석 여성가족위원회 (부이사관)
입법조사관 조만수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 이종민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사무관)

2012. 3.23부터 2012. 5.29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검무를 명함
(2012. 3.23.)

입법조사관 (서기관)	임재금	국회운영위원회	건축사무관	이대열	관리국 관리과
입법조사관 (서기관)	임종수	보건복지위원회	2012. 3.23부터 2012. 4.30까지 제19대국회 개원종합지원실(상황실) 검무를 명함 (2012. 3.23.)		
서기관	이현정	의사국 의안과	법제관 (행정사무관)	김종규	법제실 행정법제과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안병갑	국토해양위원회	2012. 4.12부터 2012. 6. 5까지 제19대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의원등록실) 검무를 명함 (2012. 4.12.)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양창석	행정안전위원회			
2012. 3.23부터 2012. 5.30까지 국회 입법예고 서비스시스템 구축 사업 검무를 명함 (2012. 3.23.)					
경제법제심의관 (부이사관)	김한근	법제실			
입법조사관 (서기관)	송수환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시설서기관	송기형	관리국 관리과			
서기관	오 응	국제국 의전과			
서기관	조국제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서기관	김화중	운영지원과			
서기관	성소미	의사국 의사과			
서기관	황충연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실			
서기관	남궁인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법제관 (행정사무관)	이홍석	법제실 법제연구과			
행정사무관	이정미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2012. 3.23부터 2012. 6. 5까지 제19대국회 개원종합지원실(개원준비기획단) 검무를 명함 (2012. 3.23.)					
관리과장 (서기관)	정환철	관리국 관리과			
시설서기관	정길준	관리국 시설과			
서기관	임동석	의사국 의회방호과			
행정사무관	김성훈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 국회관계법규

다음 게재된 「국회도서관공무원 신열하일기 지침」, 「국회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담팀 운영에 관한 지침」은 공문 시행을 대체함.

◇ 국회도서관공무원 신열하일기 지침

1. 제정이유

각국의 도서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문화유적 등을 시찰하여 도서관에 필요한 우수한 제도와 모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신열하일기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열하일기는 2인 이상이 1팀을 이루어서 실시함(제3조).

나. 신열하일기는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일 기준 국회도서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제4조).

다. 신열하일기 대상자는 팀별 연수계획서와 최근 2년간의 조직기여활동 등을 평가하여 선발함(제6조).

라. 신열하일기 연수팀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또는 팀별 연수보고서를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함(제7조).

국회도서관공무원 신얼하일기 지침

2012. 3. 19. 국회도서관지침 제12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단기해외연수 과정의 하나인 신얼하일기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신얼하일기는 국회도서관의 미래 가치 또는 존재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와 관련한 외국의 도서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문화유산기관 등을 시찰하고 제도 및 특성 등을 조사하는 단기해외연수 과정이다.

제3조(인원) 신얼하일기는 2인 이상이 1팀을 이루어서 실시한다.

제4조(대상자 자격요건) 신얼하일기는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일 기준 국회도서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얼하일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선발일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선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

제6조(대상자 선발방법) 신얼하일기 대상자는 팀별 연수계획서와 최근 2년간의 조직기여활동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며, 세부사항은 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신얼하일기 연수팀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또는 팀별 연수보고서를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회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담팀 운영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및 국회도서관 현안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의원입법에 필요한 각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입법 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입법활동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운영함(제1조).
- 나. 국회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담팀은 국회도서관 소속 5급 이상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6급 이하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함(제2조).
- 다. 기획담당관은 서비스 전담팀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편성·실시할 수 있음(제3조).
- 라. 서비스 전담팀의 활동 시 기획담당관실에 비치된 의원 서비스 현황에 활동실적을 기재하고, 기획담당관은 국회도서관장에게 수시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제4조).
- 마. 국회도서관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서비스 전담팀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담팀 운영에 관한 지침

2012. 3. 19. 국회도서관지침 제12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입법활동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회도서관 현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팀 구성)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그 보좌직원에게 국회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급 이상 직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6급 이하 직원을 팀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교육) 기획담당관은 서비스 전담팀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편성·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보고) ① 서비스 전담팀이 해당 위원이나 그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 서비스 홍보 및 서비스 요청 사항에 관한 수요 파악 등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에 활동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획담당관은 서비스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국회도서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등의 실시) 국회도서관장은 서비스 전담팀의 활동실적 등을 12월 말까지 평가한 후 실적이 우수한 전담팀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12. 3. 19>

의원 서비스 현황

담당자	성명	기간

성명 (정당)	연락처	호실		
		전화번호		
약력				
보좌진				
서비스 내용				
일시	내용		면담자	비고